

신선농식품 수출실무 절차

2015. 4.

농식품 수출절차



1. 수출품목 선택

품목선택에 앞서 신선 & 가공식품 확인사항

신선식품

- 수입국 검역(검역본부), 검사(식약처) 조건을 사전확인
 - 검역 : 수출단지 지정여부(배 / 미국, 호주), 선과장 등록 (사과, 배 / 대만), 수입금지 해충발견 여부 등
 - 검사 : 수입국 농약잔류 허용치, 사용 첨가제 (감귤 : 부패방지제) 등

가공식품

- 특정식품 공장등록 (미국, 중국), 성분 및 영양분석 (미국), 라벨링 (미국, 중국), 허용첨가제 등
 - 최근 해외aT, KATI 등을 통해 조사, 전달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, 바이어와 사전확인만 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이용되어 검역,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임

1. 수출품목 선택

■ **산지계약** : 원예전문수출단지, 농협, 영농조합법인 등

- 계약내용 : 구매단가, 운송조건, 정산조건, 클레임 조건 등
- 파프리카, 방울토마토, 청고추, 깻잎, 오이 5대 품목은 일본 수출시 대일 수출채소류 ID등록 필요 (선통관 후검역 적용)

■ **수출물류비 지원여부 확인** : 35% 이내 (aT 10, 지자체 25)

- 신규업체는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실적 FOB기준 25만\$ 이상 지원



2. 시장개척

직접 시장개척

- 해외식품박람회, 국내·외 수출상담회 참가

➡ aT지원 : 식품박람회 [부스임차비 등], 수출상담회 [바이어초청비 등]

간접 시장개척

- 샘플송부 수출상담

➡ aT지원 : 샘플통광운송비 지원 [운송 · 통관 비용의 90%, 연 1천만원 이내]



3. 선적 전 진행사항

바이어 신용조사

■ 기관 : 한국무역보험공사(www.ksure.or.kr), KOTRA, 한국신용정보 등

*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시 수출보험 확보 필요

원가 산출

■ 원가산출 : 국내 운임 이후는 선박 · 항공 대리업체를 통해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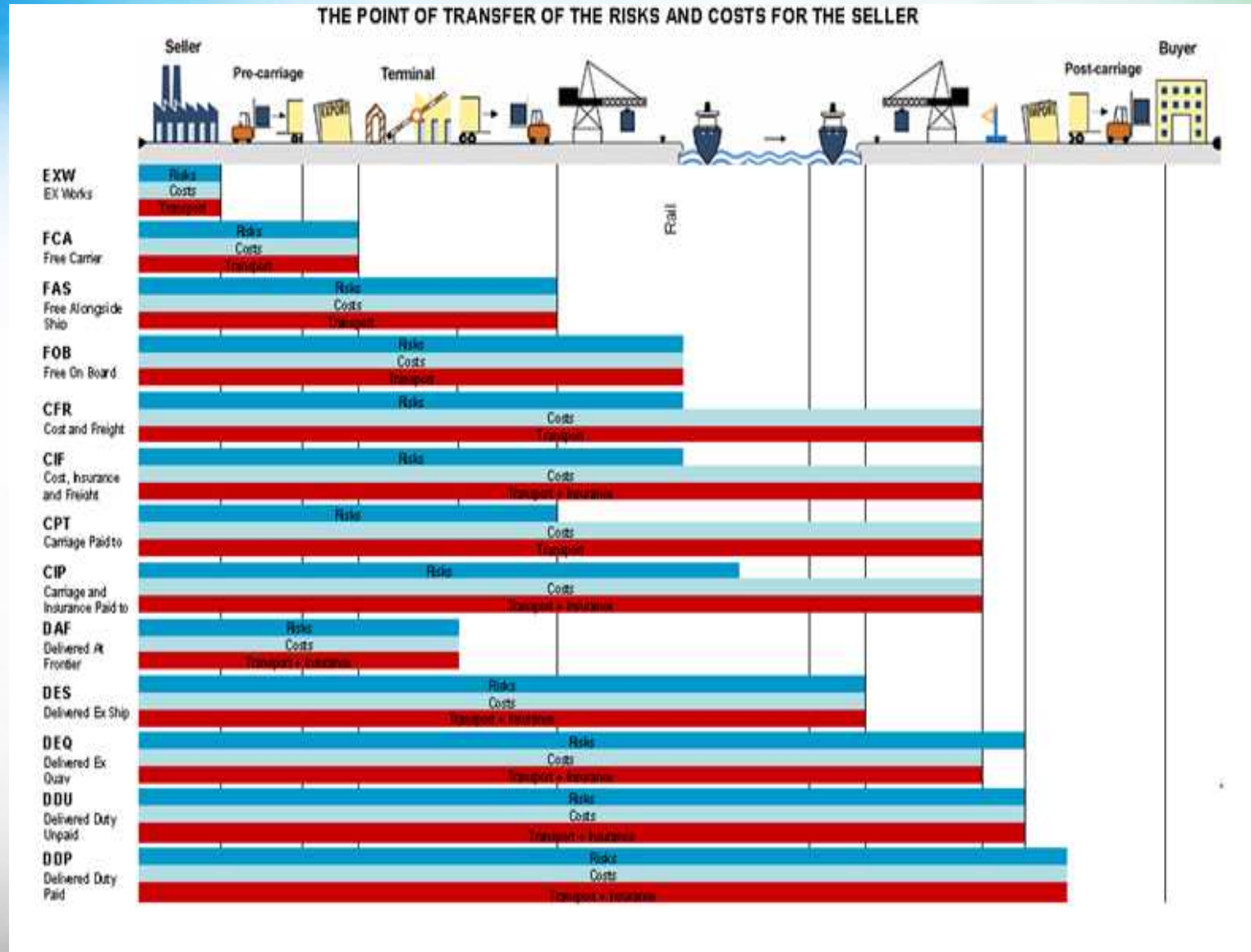
- ◆ 물품대 : 상품대금, 구매수수료, 창고사용료 등
- ◆ 수출포장비 : 작업인건비, 포장비용, 부자재, 선별비용 등
- ◆ 국내운임 : 컨테이너운송료, 철도운송료, 연안운송료, 화물운송료 등
- ◆ 선적부대비용 : THC, CAF, BAF, 컨테이너세, CFS Charge, Wharfage해상 및 항공운임
- ◆ 보험료 : 수출보험, 해상적하보험
- ◆ 기타 : 서류발송료, 은행수수료, 훈증비용, 잔류농약검사비, 이윤 등

무역계약체결

■ 무역계약체결

- ◆ 총괄계약 : 무역거래 일반약정(General Agreement), 거래 기본조건, 거래상품의 기초조건, 매매계약의 기본조건,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등
- ◆ 개별계약 : 품목별 세부 거래조건, 동일품목 조건 변경 등
 - ※ 수출가격은 국제상업회의소(ICC)에서 제정(2010년 개정)한 Incoterms 2010에 따라 수출단계에 따라 FOB(Free On Board), CFR(Cost & Freight), CIF(Cost, Insurance & Freight) 등으로 구분됨

3. 선적 전 진행사항



4. 선적 진행사항

수출작업발주

- 수량, 상차도일, 상차장소, 구매가격 등

수출신고

- EDI(Electronic Data Interchange)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

- ◆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 Unipass 사이트로 출력 (<http://customs.go.kr/kcshome>)

식물검역의뢰

- 농림축산검역본부 (www.qia.go.kr)

- ◆ 신청방법 : 인터넷, 우편, FAX, 방문접수, 전화 등
- ◆ 관세청 Unipass 사이트로 출력 (<http://portal.customs.go.kr>)

원산지 증명서발급

- 대한상공회의소(www.korcham.go.kr), 세관

- ◆ 기관발급 : 싱가포르, 아세안, 인도, 페루 등
- ◆ 자유발급 : 미국, EU, 칠레 등

선적서류 작성

- ◆ 수출업체 : 상업송장 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 등
- ◆ 선사/포워딩(선하증권[Bill of Lading]), 수출신고필증(관세사), 식물검역증(농림축산검역본부), 원산지증명서(대한상공회의소) 등

5. 선적 후 관리

클레임 확인 : 계약시 도착 후 5일 이내 검품 후 클레임발생유무 확인

- ✓ 수출자 클레임 (품질상 하자, 수량부족)
- ✓ 운송클레임 (운송상 품질손상, 수량부족)
- ✓ 보험클레임 (수출자, 운송회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)

수출채권 관리 : 수출방식에 따른 대금입금 관리

- ✓ 사전송금(입금확인 후 선적)
- ✓ D/A, L/C (은행 Nego 진행)
- ✓ 신용거래(만기일 관리 및 입금) 등

보험통지 : 수출보험 부보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 및 결제통지

비용처리 : 운송업체, 포워딩, 관세사 등



6. aT 수출지원자금 신청

■ 수출물류비 신청 : aT 각 지역본부 수출유통부

- ◆ 인터넷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 통해 신청

※ 공급산지가 원예전문생산단지일 경우 인센티브 별도지원

■ 수출보험비 지원 : aT 각 지역본부 수출유통부

지원항목	환변동보험료 (신규 환변동보험료)	단기수출보험 (중소기업플러스단체보험)
지원대상	일반형 및 범위제한 선물환 가입비 (환율 하락시 지급, 상승시 면제)	선적 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 (5만불 이내에서 대금미회수 보장)
지원비율	가입보험료의 95%	가입보험료의 90% (가입보험료의 100% 지원)
지원한도	30백만원 한도 (2백만불 이내 청약)	30백만원 한도 (수출액 3백만불 이하 업체지원)

■ 수출농식품 해외인증지원

- ◆ 대상인증 : 할랄, GOST-R, Kosher, 미국FDA 등
- ◆ 지원내용 : 해외인증취득 및 연장 소요비용의 90%, 20백만원 이내

6. aT 수출지원자금 신청

■ 잔류농약검사비 신청 : aT 각 지역본부 수출유통부

- ◆ 지원기준 : 검사비의 90%

■ 과실, 화훼, 채소 선도유지제 지원 : aT 각지역본부 수출유통부

- ◆ 지원기준 : 구입비용의 90% (수출자당 30백만원 이내)

감사합니다

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대구경북지역본부